

제도 시행시 좋아지는 점은?



「성실납세협약제도」가 시행되면

법인은

- ✦ 세무문제의 신속한 해결로 세무상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축소할 수 있고
- ✦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가산세 및 국세 불복비용이 대폭 감소하며
- ✦ 법인의 투명성이 높아져 대외 신용등급이 향상되고
- ✦ 세무문제에 대한 사후 소명의 어려움이 해소되고
- ✦ 성실한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
→ 세금 걱정 없이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.

국세청은

- ✦ 법인의 세무문제 및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·처리함으로써 친기업적 세무환경을 조성하고
- ✦ 성실한 기업에게 최적의 납세여건을 만들어주어 기업의 납세 성실도 향상 및 상호 신뢰·협력에 의한 선진세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.



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.

협약 신청 문의

• 국세청 법인세과
TEL (044) 204-3322~24 FAX (044) 216-6078

• 외국계기업 :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
TEL (044) 204-2888~2890 FAX (044) 216-6067

•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
TEL (02) 2114-2942~50 FAX (02) 736-1502

•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
TEL (031) 888-4851~7 FAX (031) 888-7635

•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
TEL (042) 615-2482~3, 2486 FAX (042) 632-7723

• 광주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
TEL (062) 236-7482~5 FAX (062) 716-7224

• 대구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
TEL (053) 661-7483~5 FAX (053) 661-7058

• 부산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
TEL (051) 750-7452, 7454, 7455 FAX (0503) 116-1134

• 인천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
TEL (032) 718-6492~5 FAX (032) 718-6031

함께 만들어갑니다!
대한민국세미래 126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
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

2019. 6 국세청 법인세과

중소기업의
성실신고를 지원하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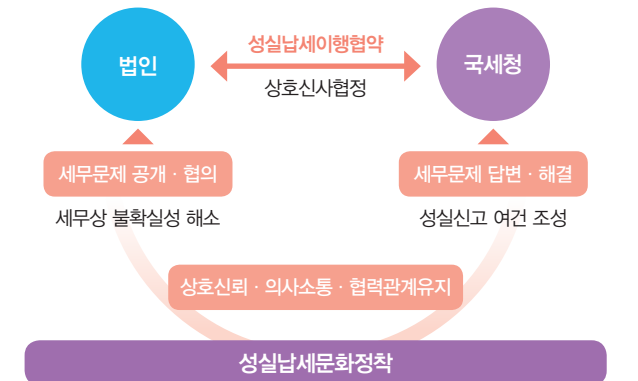
성실납세 협약제도

성실납세 협약제도는
국세청이 일정요건을 갖춘
성실한 법인과 세무문제를
사전협의·해결하여,
성실하게 신고·납부할 수 있도록
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「성실납세 협약제도」란?



- ✦ 적절한 세무통제절차를 갖춘 법인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 협약을 체결하여
- 정기·수시 미팅을 통해 법인의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국세청은 답변·해결 등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
- 법인이 납세의무를 신속·정확하게 확정하고 성실히 신고·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
- ✦ 주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고 신고에 반영되는 등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, 해당 사업연도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

협약체결은 어떻게 합니까?



01 신청요건

- + 신청일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백억원 이상이고 1천 5백억원 미만으로서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윤리 경영·투명경영을 실천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.

내부세무통제시스템이란?

납세의무이행이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능할 법인 내부의 통제기준 및 통제절차를 말합니다.

02 신청방법

- +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매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「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」와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사업현황 및 조직·출자관계 자료
-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등

※ 신청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공지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03 협약체결 절차

- + 서면심사, 현장확인 등 선정요건을 심사하여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.

※ 협약당사자는 법인은 대표이사 또는 세무담당임원, 과세관청은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입니다.

04 세무진단서비스 제공

- + 협약체결 신청시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진단을 희망(세무진단신청서 제출)한 법인에 대하여는 협약연도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진단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협약의 주요내용은?



01 협약기간

- + 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.
- + 다만,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.

02 협약개시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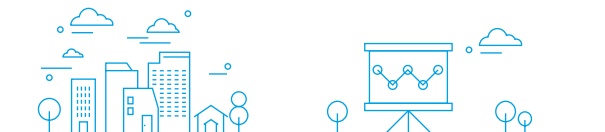
- + 협약체결 신청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협약이 개시됩니다.

03 협약체결 세목

- +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세를 대상으로 합니다.
- ※ 예: 법인세, 부가가치세, 교통세, 원천징수세목 등

04 세무문제 공개 및 답변 의무

- + 협약체결 법인은 쟁점 세무문제를 국세청(전담직원)에 공개해야 하고, 국세청은 상담·서면답변(법령해석 등)을 신속·정확히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.
- ※ 국세청에 공개한 세무문제는 국세기본법 상 비밀유지 원칙이 철저히 적용됩니다.



05 정기·수시 세무진단

- + 국세청은 매년 1회 또는 법인의 요청시 법인의 쟁점 세무문제와 기타 궁금한 사항을 함께 논의·해결하고, 내부세무통제시스템 및 협약이행사항을 확인합니다.
- ※ 세무문제가 난해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유권해석 등을 신속·정확하게 받아 드립니다.

06 협약의 효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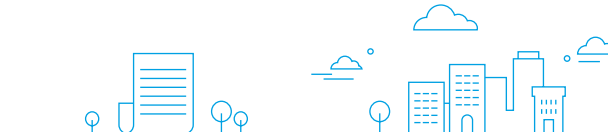
- + 협약기간동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.
- + 다만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과거 사업연도의 세무문제를 상호 논의하여 해결해 드립니다.

07 협약의 파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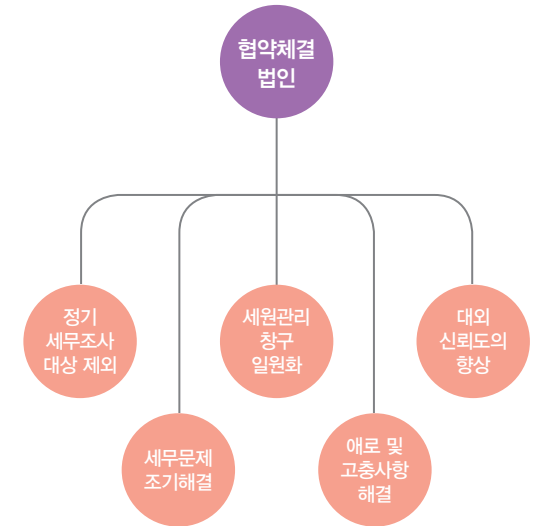
- + 국세청이 정한 일정사유가 발생할 경우, 협약은 파기되고 효력이 상실됩니다.

08 협약기간 자동종료

- + 수입금액이 2천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협약은 종료합니다.



협약체결 기업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?



- + 주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고 신고에 반영되는 등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, 해당 사업연도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+ 주요 세무문제가 사업연도 진행 중에 신속·정확하게 해결되어 추후 가산세나 불복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
- + 협약 전담반에서 세원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.
- + 국세청과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 외에도 법인이 건의하는 애로·고충사항을 해결하여 드리고 제도개선 시 반영됩니다.
- + 법인이 희망할 경우,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협약체결 명단을 공개하여 대외 신뢰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